

#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7,428,731	12,822,862
일반회계	389,322,115	11,679,663
특별회계	38,106,616	1,143,198
공기업특별회계	11,675,649	350,26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675,649	350,269
기타특별회계	26,430,967	792,929
수질개선 특별회계	9,359,321	280,7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517,541	15,526
주택사업 특별회계	4,518,014	135,540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19,782	24,593
자활기금 특별회계	1,884,105	56,523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318,198	249,546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81,923	26,458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99,000	2,970
기반시설 특별회계	33,083	992

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및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34,23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